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길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상위법인 「도시개발법」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이 개정·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과소토지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인계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마이크로필름 및 CD-ROM 등 구시대적 매체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적 저장매체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